

# 전자부품산업의

## 육성 및 수출증대 방안(II)

(본회 부품산업과)

### 목 차

#### VI. 전자부품산업의 육성 및 수출증대 방안

##### 1. 종합대책

##### 2.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및 촉진대책

### 종합 대책

#### 1. 전자부품산업 발전 체제 구축·운영

##### 1) 전자부품 산업발전 및 수출 촉진 협의회(가칭) 구성, 운영

협의회는 정부, 연구 지원기관,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로(15명 내외) 구성하되 생산자단체인 진흥회 내에 사무국을 둔다.

그 기능은 전자부품 산업의 발전 및 수출촉진 의견 수렴 및 전자부품 산업의 발전 및 수출촉진 정책 자문 외에도 본 조사를 계기로 도출된 다양한 수출촉진 방안은 그 범위와 대상이 방대하여 방안의 구체화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실행을 주관하는 것으로 한다.

정기적으로 연2회 회의를 개최하고 매분기 및 필요시 수시

로 임원급 중심(업계, 관련기관)으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동향분석 및 대책을 심도 있게 협의한다.

##### 2) 전자부품 산업발전 중기(5년 단위) 및 단기(당년) 실천계획 수립, 시행

또한 협의회가 구성되면 여기서 중, 단기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각종 기술개발 계획, 수출계획 및 내수전망, 지원정책 및 경영전략 등을 점검·수립할 수 있다.

#### 2. 해외 마케팅 강화

##### 1) 사이버마켓 체제 구축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현재 진흥회에서 구성,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부품 홍보 D/B를 확대 개편하여 "한국의 우수 전자부품"이라는

D/B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세계적인 부품D/B화한다.

D/B에 수록되는 내용은 부품 기업 현황정보 (생산품목, 연락처, 자본금, 매출액, 종업원수 등) 및 상품(부품)정보 (규격, 사진, 도면, 국내외 인증규격 등)으로 하되 수록 전에 KETI 등에서 신뢰성인증을 의무화하여 DB의 질을 고급화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DB는 상호 통신이 가능하므로 구매자와 공급자간 거래에 따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

현재 진흥회에서 수록한 제품의 D/B의 규모는 '98년 입력 완료기준으로 122개 업체 8,000여 품목(규격 기준)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전제하여 '99년까지 1,000개 업체 20,000여 품목(규격 기준)을 추가로 수록할 계획이다.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진흥회 투자	10억원
정부지원(산기반, 무역특계자금 등)	5억원
합계	15억원

2) 해외 유명 전자부품 전시회 참가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해외유명 전시회 (홍콩 전자전, 일본 전자전, 파리(뮌헨)부품전, 컴텍스 등)에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공동으로 한국 공동관을 설치 운영하여 보다 많은 전자부품 및 재료의 증소, 증견기업이 해외에 자사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관의 공동설치시 통관, 설치 공사 및 통역, 상담실, 사무, 홍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므로서 비용 절감과 함께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소요예산 자금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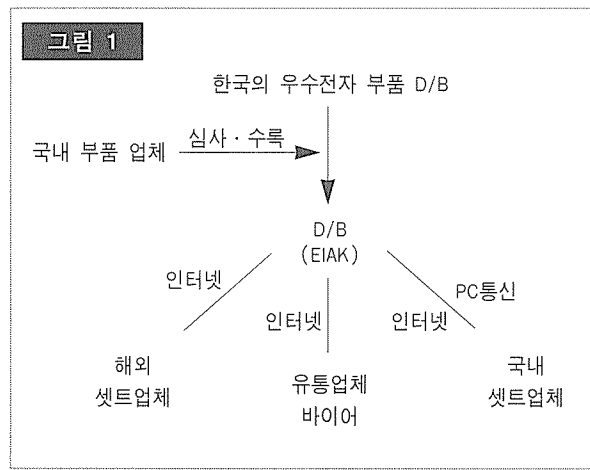
: (4개 전시회기준), 20억원 규모(해외시장 개척자금, 중소기업청 자금 등)

3) 전자부품 시장정보 센터(CMIC) 설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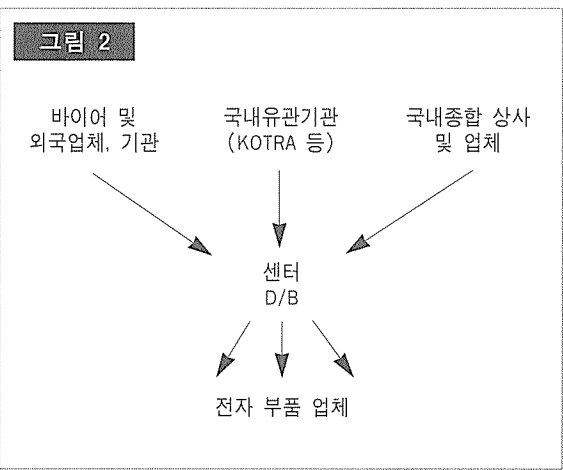
중소업체가 다수인 전자부품업체로서 마케팅 특히 수출시장 정보수집에 애로가 많으며 국내외 셋트업계의 부품수요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바이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받은 다중소량 수출주문의 연계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정부지원에 의해 정보산업진흥회(III)내에 마케팅 정보센터(MIC) 설치하여 이러한 시장정보를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사례를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로 적용하여 진

○ 정보제공 체계



○ 정보수집 및 이용체계



홍희 내에 중소기업체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설 센터를

설치하여 i) 각종 전자부품 수출주문 정보를 종합 수록하여 D/B화하고 ii) 성장 유망 품목의 소요부품 정보를 분석하며 iii) 국내·외 전자부품 시장동향 분석 등을 통하여 부품업체에 각종 수출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출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o 설치 지원 : 정보제공 시스템 설치비(2억원)(요원 및 운영비 자체 부담)

#### 4) 업체공동의 해외 전문지 및 사이버 광고 활성화

국내 부품업체는 브랜드 이미지가 취약하고 그 영세성으로 인해 단독광고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진홍희 및 조합의 주관 하에 희망업체를 모집하고 이중 품목간 공동으로 그룹화하여 공동으로 Component지, 일본 전파신문, 미국 비즈니스위크지 등 전문지나 인터넷 및 PC통신 등의 사이버공간에 공동광고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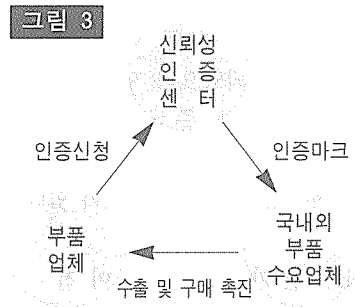
#### 5) 해외 유명규격 인증 획득 지원 강화

WTO체제 출범이후 세계시장 통합화에 따라 품질보증도 공통의 인증제도로 통합되고 있다. (ISO-9000 시리즈, IECQ 시스

템 등) 이밖에도 환경 및 안전 규격의 강화 및 유럽의 CE마크 제 등에 의한 비관세장벽에의 대응 등을 위한 국내 부품업체에 대한 국제규격 인증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 i) 전자부품 신뢰성 센터 기능 강화

- 인증체제(부품 공급업체와 수요업체간 품질 및 신뢰성인증)



※ 상세내용 부록 A1 참조

- 설치기관 : 전자부품종합기술 연구소내 부설
- 인증마크 부여 수준 : 국제 표준 신뢰성 인증 기준(IECQ)
- 지원규모 : 산업기술개발자금 등(약 750억원, '99년~ '01년간 년평균 250억원 소요)
-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선진 국제 신뢰성 인증기관과 제휴

#### ii) 전자파 장해 검사기관 기능 강화

- 유럽의 CE마크에서 요구하고 있는 불요 전파규제(EMI) 및 전자파 장해 내성(EMS)등에 대한 국제 검사기준 강화에 대

응하기 위해서 생산기술연구원내의 품질평가 시험검사소에 EMS 관련 시험검사 장비의 시설을 지원하고 자체능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iii)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인증 규격 획득을 위한 자금지원

- 검사기관에 대한 시설지원 이외에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부품업체에서 ISO, IECQ, CE, UL, VDE, BSI 등 각종 품질 및 신뢰성, 환경, 안전규격 획득을 위한 개별기업의 기술수준 제고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도 필요하다. 이는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소요자금 규모는 기업당 5천만원정도로 연간 100개사 정도를 목표로 할 때 연간 약 50억원 규모로 산출된다.

#### 6) 전자부품 수출증대를 위한 재수입 제품의 관세 경감제 도입

최근 국내 셋트업체는 치열한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상당한 데 이때 해외 생산 후 재수입하는 제품 내에 채용된 국산부품은 (재수입 국산부품 수출액 : '98년 195백만불) 세트와 부품의 관세번호가 달라 이중관세를 부담하는 모순이 있어 왔으며 '99년 1월부터는 관련법이 개정되어 (관세법 제34

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이러한 모순이 개선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부품수출 촉진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생산자 단체(진흥회 등)를 통하여 전자제품 해외생산후 재수입 업체 대상으로 동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해외 진출 국내업체로 하여금 국산부품 사용이 증진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 7) 종합무역상사를 통한 중소기업 부품 수출 확대

전자부품 업계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 언어능력 등 해외 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하여 종합무역상사 등의 도움이 필요하나 종합무역상사는 부품 수출정보가 부족하고 및 무역금융 등 자금이 부족한 것 등이 애로사항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 i) 진흥회에서 종합무역상사에 중소기업 전자부품 정보(종합 카다로그 및 CD-ROM, 전자부품 D/B 등)을 제공하는 등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전자부품 상품 홍보를 강화하고
- ii)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중소기업 위탁 수출분 상당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이는 여신제한 금액에서 제외 할 필요성이 있다.

### 8) 중소기업 수출 지원제도 강화

전자부품 수출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시장기능에 의한 지원 제도로는 중소기업 수출진흥이 곤란하다.

개선해야할 부문은 다음과 같다.

#### i) Usance L/C 매입 제한 완화

정부의 무역어음 활성화 조치('98. 8. 20) 이후 Usance L/C 매입제한은 180일 이상으로 대부분 완화되었으나 일부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현재 제외되고 있으나 이를 정부 보증 형식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 ii) 환 가 료 (IMF 이전 : Libor+1.0% 미만) 차등화

현재 Libor금리에 3.0%내지 5.0%인 (DA : Libor 4.5% ~ 5.0%, L/C : Libor+3.0% ~ 3.2%) 환가료를 중소기업의 경우 2%는 정부 부담으로 요율 인가가 필요하다.

#### iii) 무역금융 단가개선

현재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모두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90%인 것을 대기업은 90%, 중소기업은 100%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9) 해외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간 과당경쟁으로 통상마찰이 발생하

거나 해외시장에서의 국내기업간 불공정 거래로 수출단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형부품(예 : CRT, 자기테이프 등) 경우에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생산자 단체(진흥회) 주관으로 동종업계간 수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출동향 분석, 통상 마찰 정보수집 교환 등 협력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 10) 신개발 부품 특별전시 등을 통한 수출증대

신개발 부품의 경우 이를 정보를 신속하게 해외 바이어 및 수요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서 추진 중인

- i) 한국 전자전(바이어 및 국내고객 최대 유치)에 특별 전시관을 마련하고
- ii) 한국의 우수 전자부품 D/B에 신개발 부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3. 수출 유망부품 개발 및 경쟁기반 강화

#### 1) 수출 유망부품 개발 확대

현행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전 산업 대상)이나 산업기술개발자금(자본재산업 대상)은 과제를 도출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서 기술수준이나 시장규모 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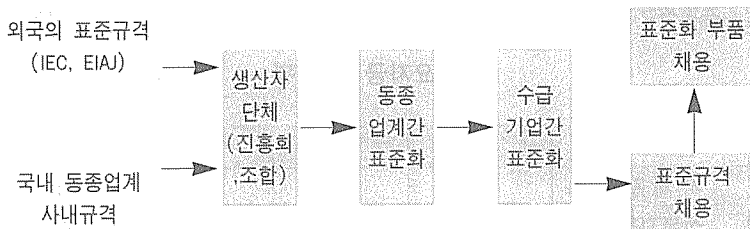
의해서 결정되므로 다중소량의 중소기업형 기술 집약산업은 구조적으로 평가에서 불리한 단점이 있으며 소수의 개별 중소기업 지원으로는 산업기반 강화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칭 Electro 21-Ⅱ 프로젝트를 조성, 추진하고 대상품목의 선정, 고시에 있어서는 중소기업형 기술집약 산업군 단위로 개발자금을 별도로 확보, 지원(전자부품, 재료산업 개발자금)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개발대상 품목으로는 부품으로서 수출이 유망한 품목(예: 차세대 전지, LCD, PCB 등)이나 수출이 급증하는 전자기기의 소요부품(이동통신기기의 부품, LCD의 부분품, 디지털 TV의 부품, 컴퓨터 부품, 유망전자재료 등)을 들 수 있다.

- 개발목표 및 지원액
- 지원 부문 : 국산 미개발 부품의 국산화 개발, 기 개발 수출 부품의 생산시설 확충

그림 4



- 지원방법 : 우선 단기적으로는 ( '99년 ) : 현행 지원제도의 자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2000년~2001년) 별도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한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주관(공동)으로 산·학·연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매년 주기로 실시한다.

2) 우수개발 부품 콘테스트 개최, 포상

각 중소 부품업체의 우수개발 부품을 선정, 시상하여 판촉활동을 지원하고 개발 유공 기업인 및 기술자의 시상을 통하여 개발의욕을 고취한다.

3) 표준화, 공용화를 통한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전자부품은 다중 소량생산 체제의 특징으로 원가상승 및 생산성 저하가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기술 도입으로 인해 산업화 초기에 표준화가 곤란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향후 고도의 자동화 정보화(CALS, 전자 상거래) 시대의 대응을 위해 표준화가 전제 조건이다.

- 표준화체제(생산자 단체 중심의 표준화)(그림 4)
- 표준화 대상 : 부품규격(치수, 형태), 용어, 검사, 시험방법 등
- 추진주체 : 진흥회, 조합(생산자 단체)

개발목표 및 지원액

구 분	'99년	'00년	'01년	계
개발목표(과제수)	30	30	40	100
지원액(억원)	400	400	500	1,300

개발자금	산업기반기술개발자금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자금 (산업자원부)
시설자금	산업기술개발자금 (산업자원부) 국산기계 구입자금 등 (산업자원부)

표준화 중기계획( '99년~'01년) : 3년간 150개 부품

연 도	'92~98	1999년	2000년	2001년	합계
표준화부품	270개	50개	50개	50개	150개

소요자금 및 지원

(단위 : 백만원)

연 도	'99년	'00년	'01년	계
자 체 자 금	50	50	50	150
정 부 지원 금	50	50	50	150
합 계	100	100	100	300

#### 4. 부품 수급기업간 협력을 통한 내수기반 확대

##### 1) 전자부품 수급기업 협의회 구성, 운영

수요처로서의 셋트업계에는 부품산업 발전을 통해 셋트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품업계에는 하청업체로서의 권익 강화하며 상호협력을 통한 개발, 납품, 수출대행 등의 상호 이익 증대를 추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부품 수급기업간 협력 사업을 조성, 지원하고 부품 수급기업간 정보교환과 이해 조정을 통해 수급기업간의 협력을 친밀히 할 수 있다.

협회의 구성은 진흥회(상근 부회장) 및 부품 수급기업 대표 15명 내외로 하고 진흥회에 사무국을 두어 년 2회의 정기회의 외에도 필요시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모제품별 부품 수급기업협의회 분과회의를 구성, 운영한다.

##### 2) 국산화 대상 부품의 시장조사 및 견본 전시회 개최

부품업계의 조기개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셋트업계 중점 개발 품목의 소요부품과 수입 규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부품의 견본 전시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품목별 시장규모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를 관심 있는 부품기업에 제공하는 등 부품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최방식은 협의회 지원 하에 진흥회 주관으로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 3) 전자부품 구매계획 조사, 설명회 개최

부품업계의 경영합리화 지원 및 셋트업계의 부품구매 원활화를 목적으로 부품업체를 한자리에 모아서 셋트 업체별로 전자부품 구매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개최방식은 협의회 지원 하에

진흥회 주관으로 매년(년초)에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이 자리에서 셋트업계 구매계획 조사, 국내 시장규모와 관련된 자료를 부품업체에 제공하고 셋트업계 구매책임자(임원급)가 구매계획 및 전략을 설명한다.

##### 4) 수요업체의 하청업체지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추진

국내 수급기업간 협력강화 유인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수요업체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인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부품 공동개발 등 기술협력에 대해서 다양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 i) 수급업체 공동으로 부품개발시 수요업체의 개발비 지원분 손금 산입을 허용한다.
- ii) 수요업체가 하청업체 기술 지원을 위해 기술인력 장기 파견시 그 비용은 손금 산입 허용하거나 iii)수요업체가 공급업체에 대해 지급보증 시 이를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으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시 반영이 필요하다.

##### 5)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부역할 강화

하도급 거래시 수탁기업이 대등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사

실상 곤란하며 불공정 거래 발생시 시정이 곤란하고 이것이 관행으로 지속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역할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i) 위반행위 사전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활동 강화  
불공정 거래의 사전예방을 위해 위탁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활동 확대가 필요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신문, 잡지,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위탁기업의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연회, 연수회 등을 개최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사내 체제 정비를 촉구해야한다.

ii) 직권 실태조사의 확대  
불공정거래 시 수탁기업의 신고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 수탁기업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직면하더라도 제소하는 것은 사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하기가 곤란한 형편이다.

즉, 수탁기업은 지속적인 수주물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정요구에 따른 갈등 유발보다는 불이익 감소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고에 대한 사후적 보호기능과 함께 관련 당국이나 시민단체 등이 거래에 대한 상시적 감시기

능 강화와 더불어 정부(공정거래위원회)의 광범위한 직권 실태조사에 입각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 5. 글로벌 경쟁시대에서의 능동적 대응

### 1) 선진기업의 기술 및 투자유치 적극화

선진기업의 기술 및 투자유치가 기술개발, 시장개척, 재정안정 등 기업 발전에 효율적 수단이며 국내기업의 자체 능력만으로는 역량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며 글로벌 시대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일본, 미국, 유럽등 선진국의 중소 전문기업 중심으로 기술도입, 합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도의 필요성이 있다.

#### i) 국별 對韓 투자 희망업체 조사 및 정보제공

해외 기술,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의 투자희망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기가 수월하지 않으므로 해외 현지 정보망을 검색하여 국별 對韓 기술공여 및 투자 희망업체를 조사하여 국내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방법으로는 전자산업진흥회와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의 주관으

로 중소기업청 등의 조사비용을 지원 받아 정부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 ii) 전자부품산업의 한·일 협력사업 확대

한국전자산업진흥회주관으로 "한·일 전자부품산업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한국의 외국기술 및 투자유치 희망업체를 조사하여 외국(일본)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유치한다. 정보제공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iii) 일본 등 외국의 기술인력 유치활동 강화

외국의 대상(퇴역, 벤처) 기술인력 조사 프로그램 추진하고 대상 기술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소득세 감면 등)한다.

### 2) 남북 협력 증대를 위한 대북 전자부품 산업단지 우선 조성

전자부품산업의 남북협력 현황은 현재 4개 전자부품 업체가 임가공 형태로 조업중이며 추가 참여 희망업체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전자부품산업의 특성상 남북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며 현재 국내 산업의 여건상 향후 공정의 자동화, 품목의 기술 집약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효과 반감되므로 시기적으로 현재가 남북의 협력이 가장 필요

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산업단지는 특정기업 그룹이 조성시 부담증가 등의 우려도 있으므로 업계 공동으로 전자부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형태는 원부자재 국내조달, 제조설비 재반입 목적으로 반출하는 임가공 방식으로 추진하며 해상 운송비용 막대한 점을 감안하여 운송, 통신등 기본적인 인프라도 조기 구축할 필요가 있다.

### 3)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 지원 강화

중소 부품업체로서는 경영 합리화 등을 위해 해외투자의 필요성 상존 하고 있으나 신규 투자시 투자환경 조사 및 투자후 발생하는 경영 애로에 대한 대책강구가 곤란하여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며 최근 현지법인간에 중복투자, 정보공유 배격, 인력 및 가격 등의 과당 경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업체간 조정기능도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무역진흥회(JETRO)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애로 및 현지국 정부와의 협상창구 역할을 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용중 이다.

i) 투자환경 조사 및 정보 제공  
KOTRA 등에서 투자환경 조

사 및 정보를 제공한다.

### ii) 지역별 투자 협의회 구성, 운영

「지역별(업종별) 협의체」를 구성, 초기는 현지 정부기관 주도로 구성, 점차 민간 주도로 운영하여 협의체 중심의 현지화(현지문화 이해 및 동반자적 신뢰감 형성)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지역개발 지원사업 발굴하는 등 현지 경영애로를 공동 타개한다. 또한 지역내 시장정보 교환 등 업계간 정보를 공유를 통한 협력 증대의 창구역할을 한다.

### iii) 투자 유망지역에 전자단지 조성 지원

한편 중국 등 투자 유망지역에 모기업과 중소부품 업계간 기술, 시장 등 협력을 위한 전자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 4)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시 구제제도 이용 활성화

현재의 국내 산업피해 구제제도는 미국의 경우 노조의 간단한 제소장으로 조사 진행되는 반면에 국내제도 절차 복잡하다.

제소 준비시 조사기간만(국내산업, 덤핑수출국 산업 및 가격 등) 약 1년 소요되며 제소후 판정 소요 기간 도 무역위원회 절차상의 최단기간으로 산정해도 8개월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며 중소기업의 특성상 변호사와 회계사 고용 필수적으로서 이에

따른 제소업체의 비용 또한 최소 5,000만원 정도로 예상되어 중소 부품업체 단독으로는 대응이 곤란하다. 또한 덤핑징제소에서 승소하더라도 부품업계의 구조상 이미 폐업까지 이르는 사례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시장, 유통개방, 무관세화 등 무한경쟁시대에는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이므로 현재의 구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산화 부품개발 초기의 취약 기에 덤핑공세로 인한 피해사례는 과거부터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가 절실하다.

### i) 제소절차 간소화로 피해 최소화

사전 준비체제 확립 및 제소절차 간소화로 제소 준비과정 최단기화(2~3개월 이내)하여 현재 제소준비에서 판정까지의 소요기간을 1년~21개월에서 10~15개월로 단축한다.

### ii) 중소기업의 산업피해 구제기금(제소비용) 조성 및 지원 확대

현재 2,000만원 한도내 소요의 50%까지 지원하는 것을 소비비용이 최소 5천만원인 점을 감안해 한도 4,000만원내 소비비용의 80%까지 지원으로 변경한다.

iii) 업계 공동제소 방안 활성화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하여 수입제품 DB를 구축하고 동종업계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업계 공동으로 대응 공동제조를 추진한다.

## 6. 기술개발 촉진 및 우수 인력 확보 지원

### 1) 중소기업 공동기술 개발사업 우선지원

현재의 공동기술개발 사업지원 방식은 연구조합의 선행 기술개발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취약한 중소기업 공동개발 사업 지원이 부족하여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에는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므로 기업의 자발적 공동개발 체제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선행 품목 중심에서 원·부자재 개발, 공정기술(자동화 기계) 개발도 포함하는 등 공동개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건비 중심의 지원에서 기자재 중심의 지원으로 업계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연구 시험 기자재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

### 2) 대형 국책 연구개발 사업에 부품개발 비중 확대

현재의 대형 국책 연구개발사업(G-7, 중기거점 과제 등)은 시스템 개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발초기에 시스템 설계시

에 적용되는 핵심부품이 모두 외산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사후에 국산화개발이 성공하더라도 규격 적용이 곤란하며 개발된 시스템(셋트)의 상품화 시에는 부품수입 유발로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핵심부품의 수입이 동반되어 개발 효과가 반감되는 등 국가 경쟁기반이 허약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부품업계는 국책개발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대형 국책 연구개발 사업의 시행시 관련 부품 개발비를 50% 이상 포함하게 하고 부품개발은 부품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토록 개선해야한다.

### 3) 부품 개발기술의 산업계 이전 촉진을 위한 D/B 구축, 지원

정부지원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취약한 중소 부품업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원(지원비율 100%) 개발부품 기술과 연구소, 대학, 기업 등에서 기술이전을 희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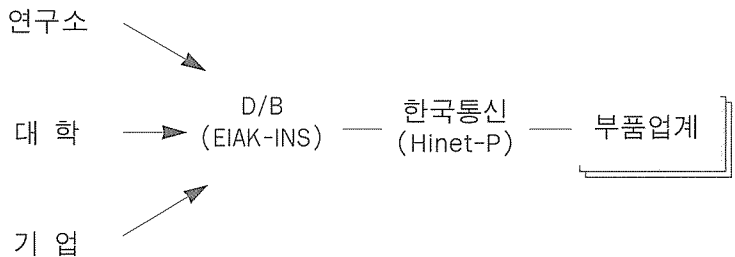
는 부품개발 기술을 전자산업진흥회에서 D/B화하여 정보제공체제를 구축한다.

- 정보수집, 지원체제  
이를 기반으로 개발 연구소(대학 등)에서 이전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 4) 신제품 개발을 위한 선진기술 도입료 지출에 대한 조세감면 제 도입 추진

현재 우리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경쟁력 부족에 있고 이를 자체 개발만으로는 상당기간이 소요되거나 불가능한 부분도 있어 세계 첨단기술의 도입, 소화가 활성화되는 것이 경제난 극복에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소부품 업계가 첨단기술을 개발할 경우 자체능력이 부족해 대부분 선진기술을 도입, 이를 소화 개량하는 형태로 개발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기술개발 지원제도는 자체 개발비에

#### • 정보수집, 지원체제



만 조세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조세감면 규제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별표 #4의 사업) 앞으로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선진기술의 도입에 지출비용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단, 중소기업은 전액을 대상, 기타 기업은 50%까지 인정)

**5)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에 대한 부품산업 기반시설 지원확대**

연구소에 대한 현행 지원제도는 개발 프로젝트 중심이므로 많은 중소부품 업체에게 필요한 품질 및 신뢰성 시험 검사시설, 칩셋 (ASIC) 개발을 위한 시설, 설계 등의 기술인력 양성 시설, 기술정보 수집 및 제공시설 등 산업기반 시설확충이 곤란하다.

산업기반시설 확충 중심의 중소기업 부품산업 지원방안을 연구소 발전 3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 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기반기술 개발자금의 특별 지원을 한다.

**6) 연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 강화**

현행의 병역 특례제도(관련법령 : 병역법 제36조,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87조)는 연구 및 기술인력 특히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의 요체가 되고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상인력의 부

족, 운용상의 일부 경직성이 기업의 애로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병역 특례인원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내 이동 등의 경우 사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동일기업내 연구소 T/O는 기업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7) 중소기업의 기술,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 도입, 추진**

우수 연구인력이 대학, 국책 연구소 선호로 편중화되어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근무기피 현상이 심각하여 중소기업체로서는 기술개발의지는 상당하나 인력부족으로 기술개발여력이 없다.

요인은 국책 연구소 요원에 대한 세제혜택 등으로 임금 격차가 큰 것도 상당한 원인이므로 기업 연구소,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제 도입이 시급하다.

**8) 국책 연구소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 및 인력 재교육 확대 지원**

현재도 연구소별로 자체 사업으로 각종 신기술 세미나를 시행중이나 업계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이공계 교육이 이론중심, 교육환경이 실험실 규모 운영되

고 있어 기업 또는 연구소 수요에 합당한 현장 지향형 인력양성 미흡하므로 실습위주(Pilot규모)의 현장지향형 교육을 통한 신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능력을 배가시켜 전문 기술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업의 경우 입사후 1~2년을 재교육 후 실무 투입으로 막대한 예산,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년 1인당 3천 만원 이상으로 추정) 되고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는 상당한 수준이나 우수인력의 취업기피로 전문 고급 인력 채용이 곤란하고 기존 전문인력의 대기업 이직문제가 심각하다.

한편 부품설계기술이 중소 부품업체의 가장 큰 애로기술로 조사되고 있어 세계적인 기술추세에 맞는 신기술 개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기술인력의 재교육 시급하다.

각종 현장지향형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산기반사업 등)을 확대지원해야 하며 공공 장학금중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취업 조건부로 산학협동 장학생 제도를 운영하거나 혹은 중소기업 취업 조건부의 정원외 입학 등 새로운 중소기업 인력 공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7. 유망 전자재료의 집중 개발

일본 등 부품 선진국의 전자 부품산업은 재료기술이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자 세라믹 재료의 경우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이동통신용 부품(VCO, 듀플렉서 등)의 소형화, 모듈화를 주도하는 기술로서 국내 재료기술 기반이 취약하여 주요 핵심소재 전량 수입에 따른 대일 의존도 심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CRT용 새도마스크, 디스플레이 소자용 PR, HDD용 압연박 등)

소재별로 소 그룹화하여 전문 연구그룹을 중심으로 기초기반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전자 세라믹 분야, 금속재료분야 및 고분자재료분야 등)

(상세내용 부록 A2 참조)

○ 추진체계

## 8.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 1) ITA 관련부품 및 국산불가 부품의 관세율 인하

'99년부터 ITA와 관련된 부품 수입시 무관세화가 시행되는데 국내 제조업체가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부재료는 관세가 부과되어 역관세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내 부품업체는 수입 부품에 비해 원·부재료에 부과된 관세액 이상의 생산비 상승 요인으로 경쟁력 약화 및 수입 급증이 우려된다.

ITA 관련 부품에 소요되는 주요 제반 원·부자재의 무세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역관세 시정으로 공정 경쟁체제가 구축되고 생산비 절감으로 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기할 수 있

다. '99년 상반기까지는 대상품목을 조사하고 '99년 하반기까지는 관세율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 2) 자동화 및 첨단설비 시설재와 그 부품에 대한 관세 경감제 확대

자동화 및 첨단제품에 대한 시설제 도입시에는 관세가 감면되고 있으나 시설제를 국내에서 제작코자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감면 및 수입통관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들 시설재에 대한 부품의 관세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장시 A/S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관세법 제28조의 7 제4호, 시행규칙 제21조의 2)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자동화 및 첨단설비 시설제에

### 유망전자부품/재료의 총체적 개발

전문연구그룹 중심으로 재료의 특성별로 재료개발 소그룹을 운영

**이동통신/광부품분야**  
(KETI 등)

- 설계 (부품 및 시스템)
- 설계시부터 신뢰성 및 표준화와 연계

**전자세라믹분야**  
(KAIST/한양대 등)

- 절연세라믹 재료그룹
- 유전세라믹 재료그룹
- 자성세라믹 재료그룹
- 후막기술그룹 (적층기술 등)
- 박막기술그룹 (MEMS, 광부품 등)

**금속재료분야**  
(서울대/KAIST 등)

- 비정질합금 그룹
- 자성재료 그룹
- 박형화 그룹 (알루미늄박, 동박 등)
- 분말화 그룹 (Ag, Pd, Ni 등 전극 재료)

**고분자재료분야**  
(포항공대 등)

- 고분자 절연재료 그룹
- 고분자 유전재료 그룹
- 고분자 자성재료 그룹
- 고분자 도전재료 그룹 등

소요되는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국내에서도 첨단설비의 개발/제작이 확대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내 현실에 맞는 자동화 및 첨단기기의 제조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고장설비의 A/S도 간편하여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시설비가 보다 저렴해지므로 업계의 자금 및 금융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제고되고 국내 생산 확대에 무역수지도 개선될 수 있다.

'99년 상반기까지 대상품목이 조사되어 '99년 하반기까지 관세율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 3) 직업훈련 분담금제 축소, 폐지

업계의 직업훈련관련 비용이 노동부장관이 책정·고시한 금액 이하(기업의 직업훈련 비용이 임금총액의 0.02% 이하)인 경우에 차액을 직업훈련분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직업훈련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동비용전액을 분담금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며 직업훈련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이 산출된 분담금이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관련법: 직업훈련기본법 제28조)

이러한 원인으로 업계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며 불가피한 직업훈련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차액을 분담금으로 납부하지만 직업

훈련 분담금을 통해 훈련된 인력은 활용이 곤란한 것이 현실로서 그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인 전자부품업체에는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분담금만 내는 것으로 인식되는 등 실수요기업의 기술인력 양성과 괴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의 기술인력 양성에 자율성을 확대하여 업계의 자금 및 금융비용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99년까지는 관련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 i) 불가피한 경우의 계획변경에 대해서는 분담금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 ii) 기업이 대학 또는 공공 교육기관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분담금에서 공제하며
- iii) 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을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개정되어야한다.

### 4) 전문 중소기업, 중견기업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범위 기준적용의 합리화

현재 전자 관련 중소기업의 범위는 자산기준으로 700억원 ~ 800억원, 종업원기준으로 500명 ~ 1,000명이며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3년간 유예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관련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현행 중소기업 범위는 자산기준과 종업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업발전 과정에서 같은 규모라도 자산이 증가하면 종업원 감소 현상이 일어나 동시 만족이 곤란하다.

현재 우리 나라는 산업고도화 과정에 있어 기업이 기술 및 자본의 집약화(R&D 및 자동화, 정보화 투자 확대)를 추구함으로써 매출증가는 크지 않으면서 자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투자세액공제, 금융우대, 병역특례제도 등 중소기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다.

즉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바로 대기업과 경쟁하며 당연히 열세에 놓이게 된다.

이들 기업은 최근 겪고있는 경영난에다 지원제도 중단까지 겹쳐 기업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구조전환(기술 및 자본집약 첨단산업으로)으로 전문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속적인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성공적인 벤처기업도 다수 육성되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뒷받침 필요하다.

i) 산업의 특성과 고도화 현상을 고려 중소기업 범위 적용 기준을 자산 또는 종업원중 어느 하나만 적용되어도 인정토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하며

ii)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 5) 신용보증서류 및 절차 간소화

대부분의 전자부품기업은 중소기업이므로 담보부족으로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다.

#### - 보증절차

대출상당 및 신청→신용조사 및 심사→보증결정통보→보증서발급→은행에 대출상당 및 신청→대출

이때 신용보증서 발급에 장기간 소요 (통상 2주~3주)되며 보증에 필요한 서류가 과다하고 중복 요구가 많고 (대표 및 법인의 각종 부동산, 동산 등기서류) 결산보고서는 물론 각종 경리진표 등도 실사를 필요로 한다.

한편 법인이사가 해외 출장 등으로 부재시에는 심사가 중단되며 대표이사는 물론 다른 이사도 보증기관을 직접 방문, 날인해야 하는 등 보증절차가 복

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i) KT, NT, EM 등 국산기술 인증업체에 대한 우대보증요건 간소화하고

ii) 전산망을 통한 보증기관, 금융기관간의 신용보증

iii) 법인이사 또는 관계회사의 간단한 신용불량(대출금이자 연체 등)에 대해서도 대표자의 직접해명 요구는 생략하는 등 효과적인 보증의 신용평가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시 조속한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및 신기술 개발 촉진이 기대되며 전산망 활용으로 부대비용 절감의 효과도 기대 된다.

### 6) 외화획득용 시설재 수입시 대금분할 납부제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외국환관리규정 7-28조, 7-29조에 의하면 외화획득용 시설재 수입시 해당 물품 대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물품을 인수한 후 2회 이상 3년간 분할 지급이 가능토록 되어있으나 현재 각 은행이 BIS을 제고 등 내부사정으로 국내 수입업자의 신용장 개설을 거부하는 등 이 제도의 올바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등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때 업계의 자금 및 금융비용 부담 감소는 물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활성화도 기대되므로 금융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창구지도 등 행정지도로 동 제도가 업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 7) 관세감면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단축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시행 목적으로 도입한 시설, 장비는 관세의 80%를 감면(관세법 제 28조의 8)받고 있으나, 사후관리(2년) 기간 중에는 설치장소로 지정된 연구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관할 세관의 승인을 매번 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실제 기업에서 이용시 장비의 점검 및 교정, 외부에서 측정(검교정, 전파측정, 동일 회사의 자사내 연구소) 기업내 타 연구소로 이동사용, Workshop 등의 연구 관계 행사 등 지정 장소 변경이 빈번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유연한 연구개발 업무 추진으로 효율성 제고하고 행정간소화로 업계의 업무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기간을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장소이동시에도 사전 승인보다는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지정 계열화 업종의 일부 합리적 조정**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분야를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의 취지이지만 현행 법령(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이 업종내에서의 품목이나 기술정도에 따라 지정되어 있지 않고 업종 전체에 대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일부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이나 자본조달의 한계로 인하여 본래 취지와는 달리 기술개발 지체 및 산업발전과 구조개선에 오히려 저해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난도 첨단기술 및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자유로운 참여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업계의 자율성 확대를 자연스런 사업구조 개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을 세분화하여 업종 내에서의 분야나 기술에 따른 지정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 · 현행: 다이오드, 트랜스포머 및 코일(DY, FBT는 제외) 저항기(칩형 제외) 등

· 개선례: 다이오드(웨이퍼 가공 공정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트랜스포머 및 코일(DY, FBT)

**9) 수출 분할 신고제 도입**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조에 따르면 수출신고는 당해 품목이 신고지 세관(제조지 관할 세관 또는 선적지 관할 세관중 택일)에 전량 도착한 후 신고하고 수리 받아야 선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수출자가 당해 물품을 직접 제조도 하지만 최근에는 전국 각 지역(공장 또는 위탁생산)에서 임가공하는 경향인 관계로 한 지역으로 운송시 물류이동, 보관 등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수출업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출분할 신고제를 도입하므로써, 임가공 지역의 관할 세관 또는 선적지 세관으로 신고세관을 다원화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i)물류비 및 물품보관 등 부대비 절감 ii)수출통관 업무절차 간소화 iii) 신속한 운송 및 선적에 의한 수출확대 및 기업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0) 재수출 조건부 수입 및 수출 통관 절차 간소화**

현재 재수출 조건부 수입 시

에도 (관세법 제17조, 제29조, 제25조의2, 제26조) 일반 수입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어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물품은 수입 후 일정 장소(공장, 창고)에 보관하고 수출통관 절차를 진행한 후 관세, 부가세 환급을 받도록 되어있어 번거로운 절차로 많은 비용, 시간소요 되며 제품검사 등으로 제품파손 및 분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수출 조건부 수입품은 수입 후 부분가공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품검사는 실시하지 수입 후 무가공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통관시 재수출 조건부 수입 제품임을 명기하여 수입통관 검사 생략하고, 재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통관절차 간소화로 업계의 경비 및 시간 절약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11) 보세공장 시설재 도입시 관세 유보**

보세공장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는 관세 유보 후 정산되지만 시설재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세공장의 생산설비 확대 등, 신규설비 투자시 부대비비용이 증가하여 대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수출자유지역 업체의 경우는 시설재

에 대한 관세도 유보되고 있으므로 형평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보세공장도 수출 자유지역과 같이 설비도입시 관세 유보가 필요하다. (관세법 제28조의 7 제1항 4호)

이렇게 되면 i)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로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ii) 설비투자 활성화로 국내산업 기반이 강화되며 iii) 저가로 설비투자가 가능하므로 경쟁력이 제고되며 iv) 첨단 설비투자 확대 효과로 부품업체의 품질 향상에 도 기여할 수 있다.

### 12) 수출후 재수입 제품의 재반출시 관세 환급제 도입

수출후 A/S에 따른 물품 반입시 수입품으로 보아 관세가 부과되나 이를 수리후 재 반출시에는 관세 환급이 되지 않아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수출후 A/S에 따른 물품 반입인 경우에는 관세 납부후 재 반출시 수출 면장과 수입 면장대조 후 즉시 관세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법령(관세법 제32

조)이 개정되어야 한다.

### 13) 보세공장제도 개선

보세공장은 주로 외국인 투자 또는 100% 수출업체(주로 전자부품, 재료업체)가 이용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나, 수출증대에 직접 기여하는 제도이나 물품의 반출입 요건이 복잡하여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관세법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 i) 물품 반입시

수입물품(간접 보조재료 및 제품생산을 위한 기계류 등)은 수입 통관후 사용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국내조달에 의한 반입시에는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어야만 반입이 가능하다.

#### ii) 제조 가공품 반출시

불량품은 별도 보관하고 세관 신고 후 멸각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관세가 추징되며 직수출은 세관에 직접 신고하면 되지만 로칼수출은 내국신용장이 반드

시 개설되어 있어야 반출 가능하다.

또한 검사후 3개월 이내에 반출해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보세공장은 장부상 제고와 현품이 일치해야 하므로 가출고가 불가능하고 원재료의 종류와 규격이 다양하여 관리가 곤란하여 사후관리에 애로가 많다.

이에 따라 수입물품 반입시 통관 절차를 간소화 국내조달 물품 반입시에는 일반거래와 같이 선입고 후 1개월 단위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공후 반출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량에 따른 물품관리 절차를 규격별 관리에서 품목별관리로 개선하고 직수출 신고는 전자문서(EDI)로도 가능케 하며 로칼 수출시에는 물품 반출절차를 간략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출고를 가능토록 하고 원자재 규격별 관리를 품목별관리로 개선하며 반출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여 사후관리의 애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